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2873
------	------

2022. 3. 3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0월 15일, 이병도 의원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3. 3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 뷰티산업은 미래 유망 사업 중 하나이며, 최근 한류를 기반으로 K-뷰티산업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되면서, 2020년 국내 화장품 수출은 8조 5천 5백억 원을 기록하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음.

- 다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뷰티산업의 상품개발, 제조, 유통, 마케팅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으나, K-뷰티의 중심지인 서울은 뷰티산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지원정책 등이 전무한 상황임.
- 이에 위드 코로나 시대, 달라질 기업 환경과 제품 유통, 트렌드 변화 등을 반영해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안 제3조).
- 나. 뷰티산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뷰티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 마. 뷰티박람회 등 개최와 행사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 바. 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2조).
- 사.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위탁 업무를 규정함(안 제13조 · 안 제14조).

III.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뷰티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뷰티산업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뷰티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반 조성 등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뷰티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

- 뷰티산업¹⁾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웰빙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유망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음.
- 대표적인 뷰티산업인 화장품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9년 4,996억 달러로, 최근 5년간(2015~2019) 연평균 2.8%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6,46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²⁾.
- 국내 뷰티산업 역시 전세계적 한류 확산에 따라 K-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2016년 이후 매출액이나 사업체, 종사자 수 모두 3% 내외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1) 피부관리, 메이크업, 머리 모양, 손톱 관리 등과 같이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일과 관련된 생산적 활동이나 사업(국립국어원, 우리말샘).

2) K-뷰티 혁신 종합전략(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1. 1. 27.)

- 매출액은 2016년 49조 849억원에서 2019년 53조 4,771억원으로 증가(연평균 3.0%)했고, 같은 기간 사업체 수는 1만 7,668개(연평균 3.3%), 종사자 수는 3만 4,551명(연평균 3.1%) 각각 늘어났음.

< 국내 뷰티산업 관련 매출액, 사업체 종사자 현황 >

구 분	2016	2019	연평균 증가율 (2016~2019)
전체 매출액(백만원)	49,084,854	53,477,113	3.0%
전체 사업체 수(개)	177,788	195,456	3.3%
전체 종사자 수(명)	358,890	393,441	3.1%

※ 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 조사」, 「서비스업 조사」

- 2020년 화장품 수출실적은 8조원(75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7조원(60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화장품 수출 순위 4위로 성장하였고,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전체 산업 중 25%를 차지함.
-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뷰티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 주도와 높은 비중의 영세기업 문제로 성장에 한계가 있고, 과도한 규제³⁾와 글로벌화 부족 등으로 해외브랜드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뷰티산업을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로 인식하고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3) 국내에서 의료 면허없이 문신을 하는 행위, 이·미용에 사용하는 기기 중 고주파, 초음파 기기 등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의료인이 아닌 경우 사용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음(「의료법」 제27조).

- 정부는 2013년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2019년), K-뷰티 혁신 종합전략(2021년)을 발표하고, K-뷰티 혁신기술 개발과 뷰티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와 전략적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2012년 최초로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12개 광역자치단체(서울, 충남, 전북, 전남, 세종 제외)에서 뷰티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 뷰티거점 조성과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홍보,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참고자료).
 - 서울의 경우는 K-뷰티에 대한 상징성과 접근성,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대표적 뷰티산업인 화장품산업의 거점이자 뷰티 서비스업(피부, 이·미용)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성장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서울지역의 매출액 규모는 전국 매출액의 35.5%(14조 3,234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체와 종사자 역시 각각 24.4%(8,720개)와 30.0%(42,537명)로 높은 수준을 보임.

< 화장품산업 관련 분야의 매출액, 사업체, 종사자 추이 >

구분	전국			주요 지자체별 규모(2019)		
	2016	2019	증가율(%)	서울	부산	충북
매출액(백만원)	36,434,488	40,337,265	3.5	14,323,427	1,316,401	300,147
사업체 수(개)	36,694	35,753	- 0.9	8,720	2,558	1,058
종사자 수(명)	130,089	141,693	2.9	42,537	6,697	5,728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산업기반 취약과 분야별 연계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뷰티 소비의 중심인 동대문과 명동 등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면서 매출액 등이 감소하고 있음.
 -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상업용부동산 2020년 4분기 임대 동향에 따르면, 동대문 17.7%(전국 2위), 명동 12.6%(전국 6위)의 공실률을 기록하였으며 매출은 전년대비 8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뷰티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 뷰티산업이 가진 우수한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는 뷰티 소비 중심지역의 경제 회복과 뷰티산업의 혁신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 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⁴⁾.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는 “뷰티산업” 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 · 미용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가목)”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의 제조 · 개발 ·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나목)” ,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 · 유지하기 위한 재료 · 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다목)” 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4) 뷰티도시서울(21억원), 뷰티산업 육성행사(7억원) 추진

- 안 제2조제2호와 제3호는 “뷰티사업자” 를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 로, “뷰티산업제품” 을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 ·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 · 물품 및 서비스” 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 현재 뷰티산업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뷰티산업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혼란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됨.
- 특히 뷰티산업의 트렌드가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 ·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등 가치 소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시장이 확장되고 다각화 · 세분화 되는 상황을 고려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함.
- 다만, 영어 발음을 한글로 적은 “뷰티” 라는 외국어를 조례 제명과 본문에 사용하는 것은 「국어기본법」의 취지⁵⁾에 반할 수 있고, 안 제2조제1호 “다목” 처럼 그 대상이 모호하거나 불확정적일 경우 적용상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임.

5) 「국어기본법」 제1조(목적)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를 들어 미용시술, 문신, 피트니스, 웰니스⁶⁾ 산업, 요가, 뷰티테크⁷⁾ 등의 서비스로 광범위하게 해석돼 그 적용 대상이 대폭 확장될 수 있음.

(2)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뷰티산업의 육성과 지원,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뷰티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뷰티산업에 대한 단체장의 책무를 조례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육성과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임.

(3)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는 뷰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뷰티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뷰티 산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는 뷰티산업의 ▶ 지원방향과 목표, ▶ 전문인력의 양성, ▶ 인프라 구축, 경영과 기술지원, ▶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 ▶ 국내·외 교류와 정보교류, ▶ 재정지원 등을 포함함.

6) 웰니스(Wellness) :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으로 제시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다 심화시킨 새로운 건강관을 의미함.

7) 뷰티테크(Beauty Tech) : AI 및 AR 기반 가상 체험 등의 IT기술이 '뷰티 분야'와 접목된 새로운 기술 트렌드

- 뷰티산업 관련 중기·단기계획을 유기적으로 연동해 수립·시행하는 것은 빠르고 다양하게 분화·발전하고 있는 뷰티산업의 환경 변화에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 조치로 판단됨.

(4)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는 뷰티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 창업·기술개발·경영 관련 상담·교육과 정보제공, ▶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 ▶ 제품 생산과 브랜드 개발 지원, ▶ 국내·외 마케팅과 홍보 지원, ▶ 제품의 인증, 수출 활성화, 투자유치 지원, ▶ 국내·외 박람회와 기술 경연 대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뷰티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뷰티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등의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뷰티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입법 효과가 있게 됨.

(5)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기업지원 등(안 제6조~안 제10조)

-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는 안 제4조의 뷰티산업 지원사업별로 사업의 내용과 지원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 취업과 창업 등의 추진과 지원사업을 위해 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뷰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한 경비 지원과 대학·연구소·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규정하고, 지원대상과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음.
- 소비자 욕구 충족에 따라 뷰티산업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산·학·연 연계를 통한 제품개발, 디자인, 유통, 마케팅, 수출 등의 분야에서 미래 뷰티산업을 이끌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있음.
- 안 제8조는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 집적단지 조성, ▶ 서비스 체험공간·박물관 등 인프라 조성, ▶ 연구용역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재 서울은 명동, 광화문, 동대문, 강남 등이 뷰티산업과 서비스를 이끄는 핵심 거점지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클러스터 조성이나 체험관 등을 통해 뷰티서울의 기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9조는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사업자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 경연 대회, 뷰티박람회 개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10조는 뷰티박람회 개최·운영과 뷰티사업자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의 뷰티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뷰티산업 지원 정책과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해당 기업과 기관들의 연구개발과 경영 안정,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뷰티산업이 체계적·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입법·정책적 효과가 있음.

(6) 뷰티산업육성위원회 설치·구성 등(안 제11조 ~ 안 제12조)

- 조례안은 뷰티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뷰티산업육성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위원회의 설치·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기관·단체 간 협력과 조정, ▶전문인력 양성, 창업·경영·기술지원, ▶뷰티박람회,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심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11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12조제1항).
 - 위원은 뷰티산업 관련 실·본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서울 시의원, 뷰티산업 관련 기관·단체 근무자와 전문가 등의 위촉직으로 구성함(안 제12조제2항).

- 이 밖에 위원의 임기, 위원의 구성,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뷰티산업이 서울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필요함.

(7) 지도 · 감독과 사무의 위탁(안 제13조~안 제 14조)

- 안 제13조는 재정지원을 받은 뷰티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 · 감독을 통해 지원금의 교부 변경, 취소, 회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뷰티산업 지원 방안과 관련된 지원금의 집행을 적절하고 적법하게 관리 ·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
- 안 제14조는 뷰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 · 기관 ·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뷰티산업은 화장품, 이 ·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만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수행이 요구 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중국 뷰티산업의 급부상, 새로운 소비 트렌드 등장 등의 환경 변화에 맞춰 뷰티산업의 재도약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뷰티산업과 관련해 국가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례로 문신, 미용기기⁸⁾ 등과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까지 지원할 경우 적용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례 시행에 맞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임.

8) 피부과의사회는 미용기기가 제도화될 경우 미용기기로 규정된 범위를 넘어 의료기기 전체에 대해 유사 의료용으로 사용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고주파, 초음파 등을 활용한 기기의 경우 인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부작용 우려가 높아 미용기기 등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함(뷰티산업진흥법안, 2011.6 검토보고).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뷰티산업에 대한 정의 중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 ·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 · 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은 그 실체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적용상의 혼란이 우려되는 바,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그 밖에 재료 · 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 시행 규칙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함(안 제2조제1호다목).

VI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2873
------------------	---------

제안년월일 : 2022년 3월 31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뷰티산업에 대한 정의 중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은 그 실체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적용상의 혼란이 우려되는 바,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그 밖에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 시행 규칙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함(안 제2조제1호다목)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다목 중 “관련된” 을 “관련된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제정안과 같음)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 ·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 물품 및 서비스와 <u>관련된</u> 산업	다. ----- ----- ----- ---- <u>관련된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u> --
2. · 3. (생 략)	2. · 3. (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 ·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 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 ·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 ·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 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 ·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 · 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뷰티산업제품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뷰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뷰티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뷰티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뷰티산업의 국내·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기술개발·경영에 관련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2.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
3. 뷰티산업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지원
4.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5. 뷰티산업제품의 국내·국외 인증, 수출 활성화, 투자유치 지원
6. 국내·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지원
2. 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 지원
3. 그 밖에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 연구소 등 뷰티산업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뷰티산업제품 등의 개발과 연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한 경비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산업기반 조성)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의 집적단지 조성
2. 뷰티산업의 서비스 체험공간, 박물관 등 인프라 조성
3.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4. 그 밖에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뷰티산업 관련 경연대회, 뷰티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이에 필요
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과 지원
을 위하여 국제적·전국적 규모의 뷰티박람회, 기술 경연대회, 포럼
등(이하 “뷰티박람회”라 한다)을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국내·국외 전시회 등의 참가 지원 등 판매 촉
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뷰티산업육성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뷰티산업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뷰티산업의 창업·경영·기술지원에 관
한 사항
5. 뷰티박람회 등 뷰티산업 육성 행사에 관한 사항
6. 뷰티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여 뷰티산업 관련 실·본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뷰티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뷰티산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지도 · 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뷰티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뷰티사업자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